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19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제13183호	김문수의원	2025.9.23.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 회의(2025.11.26) 상정·검토보고 ·대제토론·소위회부
	제13362호	안상훈의원	2025.9.29.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 회의(2025.11.26) 상정·검토보고 ·대제토론·소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
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25. 11. 27.)는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자 면제 대상 확대(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 대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

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②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 대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학교 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u>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u>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	---